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정일 : 2002. 9. 1

개정일 : 2016. 1.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원의 교수업적평가(이하 '평가'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교육전임교원은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에 의하여 평가한다.<단서신설 2006. 6. 1><개정 2007. 12. 20, 2009. 2. 3>

제3조(평가종류) 평가에는 정기평가, 승진임용평가, 재임용평가, 승급평가의 네 종류가 있다.<개정 2009. 2. 3>

1.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승진임용평가 : 교원의 승진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3. 재임용평가 :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을 재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4. 승급평가 : 정년보장교수의 승급심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제 2 장 평가방법

제4조(평가분야) ① 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및 산학협력 분야로 구분한다.<개정 2011. 11. 9>

1. 교육은 강의, 실습, 대학원생지도 및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11.11.9>
2. 연구는 논문, 저서, 수상 및 제반 연구활동을 말한다.<신설 2011.11.9>
3. 봉사는 교내봉사와 교외봉사를 말한다.<신설 2011.11.9>
4. 산학협력은 대내외적인 산학협력 관련 교육, 연구, 봉사 및 기타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1.11.9>

② 일반 교원의 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로 평가하고,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교원은 교육, 연구, 봉사 및 산학협력 분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1.9>

제5조(평가항목)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12. 7, 2011. 11. 9, 2015. 2. 27>

제6조(심사기준) <삭제 2006. 6. 1>

제7조(평가기구) ① 평가를 위하여 각 대학, 대학원 또는 인제니움학부대학, 광운한림원 등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 2. 3, 2010. 12. 7, 2016. 1. 8>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9. 2. 3, 2010. 12. 7>

제 3 장 평가절차

제8조(기준월) 각 평가의 기준월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2. 3>

1. 정기평가 : 4월
2. 승진임용평가 : 1월 또는 7월

- 3. 재임용평가 : 11월 또는 5월
- 4. 승급평가 : 1월 또는 7월

제9조(평가신청) ① 평가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보고서(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기준월 10일까지 소속 학과(부)장, 교학부장 또는 광운한림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9. 2. 3, 2010. 12. 7>

- ② 승진임용평가와 재임용평가의 대상자는 제1항의 서류와 함께 소정의 임용신청서를 제출한다.
- ③ 승진임용평거나 재임용평가를 받은 교원에게는 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평가를 면제 하고 임용평가의 결과를 정기평가의 결과로 같음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평가절차) ① 학과(부)장, 교학부장 또는 광운한림원장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교수업적평가 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기준월 20일까지 소속기관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09. 2. 3, 2010. 12. 7>

-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보고서의 실질적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준 월 말일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기준월 다음 달의 10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④ 교무처는 최종 확정된 결과를 기준월 다음 달의 말일까지 개인별로 통보한다.<개정 2004. 3. 1>

제 4 장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통보 받은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여 2차 까지 재심을 받을 수 있다.

- 1.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 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무처에 이의신청 한다.
- 2.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04. 3. 1, 2006. 6. 1, 2009. 2. 3>
- 3.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 결과를 통보 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 6. 1>
- 4. 「교원인사위원회」는 외부의 교수 3인을 선정하여 재재심을 의뢰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재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6. 6. 1>

제 5 장 보 칙

제12조(비밀유지) 평가에 참여한 교직원은 그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제13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한 “교수업적평가제도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7>

본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의 [별표1]평가분야의 항목과 배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1. 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부칙 ①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1일 이후 전임교원의 연주활동은 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3. 7. 24>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2. 27>

본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1. 8>

본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 <개정 2006. 6. 1, 2009. 2. 3, 2010. 12. 7, 2011. 11. 9, 2013. 7. 24, 2015. 2. 27, 2016. 1. 8>

1. 교육 분야 기준

분류	단위 기간	평가 항목		점 수	비 고
		항 목	세 부 내 용		
강의		강의 시간	-	15 + (수업담당시수 - 책임시수)	-
		강의 평가	-	강의평가 평균값*5	-
		교육매체, 교수법 개발, 교육인증 관련 교과목 포트폴리오	공학인증 관련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공학 교육혁신센터에서 검증, 기타 인증 관련 교 과목 포트폴리오와 교육매체, 교수법 개발은 소속기관 교수업적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개정 2013. 7. 24>	3/건	-
		외국어강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강의	5/건	-
		학사운영 지원	강의계획서, 성적기한내 미입력 및 미제출 보강없는 결강 <개정 2015. 2. 27>	-3/건	-
		교양강좌 운영교수제	교양강좌 책임운영 실적	강의평가 평균점수* 강좌수/15	5점 상한
		학생 지도 (대학원 생 지도,기 타 교육 활동)	학기	대학생 과외 특별활동	학생 대상 과외활동
석사.박사 배출	석.박사 학생 논문지도 및 배출			*석사: 0.5/명 *박사: 1.0/명	4점 상한
학생 면담 지도	학생 면담			0.2/명	10점 상한
논문 심사	대학원생 논문심사(지도교수 제외)			0.2/편	2점 상한
산학 협력		현장교육 또는 실습지도	현장 답사지도, 현장 실습(교육)/인턴쉽 지도, 모의재판·학술강연회·모의국회·작품전시·각종 전시회 지도, 교육인증관련 워크숍 및 특강참 여 활동 등	0.5/건	2점 상한
		취업 성사 <개정 2013. 7. 24>	1) 학과(부)별 평가년도 직전 3개년 평균취 업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해당 학과 (부) 소속 전임 교원 전체에게 가산점부 여 2) 취업성사 교수는 취업인원별 3점 3) 해당 학과(부)장은 학과(부) 성사인원 점 수 합계의 1/2점 배점	1) [평가년도 학과(부) 취업률-평가년도 직 전 3개년학과(부) 취 업률]*1점 2) 취업성사 1명당 3점 3) [해당 학과(부) 취업 성사인원 점수 합계] * 1/2점	20점 상한
		계약형전공교과목개발 또는 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	5/건	10점 상한
		위탁교육프로그램개발	-	3/건	15점 상한
		캡스톤디자인지도	-	5/건	15점 상한
		기 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활동	0.5/건	5점 상한

※ 교육분야 상한 점수는 100점이며, 교양강좌 운영교수제와 대학생 과외 특별활동은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 교원에게만 적용됨

※ 강의분류 평가항목은 상한점수를 학기단위로 적용하고, 학생지도와 산학협력 분류 항목은 1년 단위로 상한 점수를 적용함<개정 2013. 7. 24>

2. 연구 분야 기준

분류	항 목	코드	인정조건	점수	인정비율
논문	SCI급	10	SCI(E), SSCI, A&HCI	250	• 주저자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50%
	기타 국제	11	심사제도가 있는 비SCI급 학술지	100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Proceedings)	12	학술대회 Proceedings (발표자료와 Abstract 제출 시 인정, Abstract만 제출시 인정불가)	50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Proceedings)	13		20	
	교내논문집	14	교외논문 투고비용, 편집위원 구성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기준 적용	50	• 공동저자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국내 일반학술지	15	심사제도가 있는 비 학진급 학술지	30	
	학진급	16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100	
저서	전문국제학술서적	20	해외 출판 전문 학술서적 (1)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250점, 200점, 150점, 100점 차등 부여 (2) 개정판 : 개정 부분의 내용과 분량을 고려하여 비율 산정	250 ~ 100	
	전문국내학술서적	21	국내 출판 전문 학술서적 (1)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50점, 100점 차등 부여 (2) 개정판 : 개정 부분의 내용과 분량을 고려하여 비율 산정	150 ~ 100	
	교양학술서적 <신설 2013. 7. 24>	22	해당 단과대학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서적으로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 등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50점, 30점 차등 부여	50 ~ 30	
	고전/저명문학작품 국역	23	전공 영역이 일치하는 번역서로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0점, 70점, 50점 차등 부여	100 ~ 50	
	전공서적 국역	24			
	전공서적 외국어역	26			
	편저/학술논문단행본	28	전공 영역이 일치하는 편저, 교재용으로 제작한 도서로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70점, 50점 차등 부여	70 ~ 50	
기타연구활동	연구보고서 또는 연구실적물	40	-	20	• 책임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50% • 공동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평 또는 서평	41	-	10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활동	42	대학생, 직원, 교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학인증 관련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등	25점/ 건 최대 100점	
	문학창작물 단행본	43	문학전공자에 한하여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작품성, 분량을 고려하여 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100	
학술수상	국제 학술단체상	50	10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세계적인 단체에서 수여	150	100% / 저자수
	국내 학술단체상	51	국내 공인 학술단체에서 수여	70	

※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활동 중 대학생, 직원, 교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 교원에게만 적용 됨

※ 저서 용어 정의 <신규 2013. 7. 24>

- 전문학술서적 : 전공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저술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저서를 말하며, 논문모음집, 교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교양학술서적 : 교양분야의 학술서적으로써 학술적 가치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서적
- 역서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학작품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출판한 서적
- 편저 : 여러 사람의 논문이나 문예창작물 등을 편집하여 출판한 서적

분류	항 목	코드	인정조건	점수	인정비율
문학, 디자인, 건축설 계 등	국제개인전시회	70	(1) 작품 수 10점 이상(새로운 창작 작품수*가 5점 이상 포함)인 전시회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국가의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150점, B급(보통) 100점, C급 70점 부여	150 ~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50% • 공동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국내개인전시회	71	(1) 작품 수 10점 이상(새로운 창작 작품수*가 5점 이상 포함)인 전시회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100점, B급(보통)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국제단체전시회	72	(1) 새로운 작품 수* 1점 이상 출품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국가의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100점, B급(보통)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국내단체전시회	73	(1) 새로운 작품 수* 1점 이상 출품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B급(보통) 50점, C급 30점 부여	50 ~ 30	
	국제공모전	74	(1) 해외 공모전 또는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 공모전 수상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250점, B급(보통) 200점, C급 150점 부여	250 ~ 150	
	국내공모전	75	(1) 국내 공모전 수상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150점, B급(보통) 100점, C급 70점 부여	150 ~ 70	
	국제 일반설계	76	(1) 해당국가 설계계약 인증서 또는 준공 허가서 제출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120점, B급(보통) 90점, C급 60점 부여	120 ~ 60	
	국내 일반설계	77	(1) 설계계약 인증서 또는 준공 허가서 제출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100점, B급(보통)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국제 전문지 게재	78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절차가 있는 국제 전문잡지에 게재된 작품의 작품성, 분량, 잡지의	150 ~ 70	

			수준을 고려하여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국내 전문지 게재	79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절차가 있는 국내 전문잡지에 게재된 작품의 작품성, 분량, 잡지의 수준을 고려하여 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주저자 : 제 1저자, 교신저자임(교신저자 별도 표시가 없으며, 제 1저자가 학생인 경우는 그 학생의 지도

교수 또는 교신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작품수 : 건축설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분류	항목	코드	인정조건	기준시간	점수
공연 및 창작· 지휘 등	개인발표	80	(1) 독창회/독주회/작곡발표회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60분 이상	150 ~ 70
	공동발표	81	(1) 듀오 연주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협연	82	(1) 독주악기의 전악장 협연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83	독주악기의 그랜드피스 또는 단악장		40
		84	Two Pianos 및 2중주, 3중주 또는 중창 전악장 협연		50
	실내악/ 기악 앙상블	85	3-10중주(성악(독창, 중창, 오페라갈라콘서트), 국악준합)	전체프로그램	70
	반주	86	기악·성악·국악 반주	전체프로그램	50
	창작	87	(1) 오페라, 교향악곡, 관현악곡, 오라토리오, 미사, 칸타타, 무용음악, 창극 작곡발표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30분 이상	150 ~ 70
		88	실내악곡, 합창곡, 기악독주곡, 연가곡, 전자음악	10분 이상	70
		89	가곡, 보컬곡	5분 이상	50
	지휘	90	(1) 교향악단(관현악단)/오페라/집박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전체프로그램	150 ~ 70
		91	실내악단/전문합창단/집박	전체프로그램	70
	기타	92	기타 음악분야 실적		20

※ 공연 및 창작·지휘 등 실적은 해당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신설 2013. 7. 24>

※ 최초공연일로부터 3년 이내 재연주의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개인발표에 대한 공연장규모 : 공인된 100석 이상의 전문 연주홀 <개정 2013. 7. 24>

※ 개인발표(코드번호 80), 협연(코드번호 82), 창작(코드번호 87), 지휘(코드번호 90) 실적은 공인된 전문 <개정 2013. 7. 24>

연주홀의 객석 규모, 연주 또는 지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세부 등급을 결정. 단, 기준시간이 정해진 실적유형 중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의 70%까지 배점 가능

- ※ 연주 등과 함께 지휘활동을 하는 경우, 별도 지휘실적으로 인정 불가 <개정 2013. 7. 24>
- ※ 음반의 경우 공연실황을 담은 영상물을 수록한 것으로 타 연구업적과 중복되지 않은 것만 인정

분류	평가항목			점수	비고
	항목	코드	세부내용		
산학협력	국제특허 <개정 2013.7. 24>	30	(1)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인정 <개정 2013. 7. 24> (2) 대학 소유권이 없는 특허는 현 기준점수의 30%를 배점. 대학 소유권이 있는 특허 중 지분을 100%는 기준점수의 100%를 배점, 50%이상은 80%를 배점, 50%미만은 50%를 배점 (3) 최초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100% 점수 부여하고 이후 동일 내용의 추가 특허 등록에 대해 10% 가산점 부여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50% • 공동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국내특허 <개정 2013.7. 24>	31		100	
	전공 관련 국제 표준기고문 (제출/채택)	32	-	10/90	
	전공 관련 국내 표준기고문 (제출/채택)	33	-	5/45	
	실용신안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 설계권	34	본교 산학협력단에 소유권이 이전된 지적재산권	30	
		35		10	
	기술이전	36	기술이전료	100만원 당 10점	
	신기술, 신제품 인증 <개정 2013.7. 24>	37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신기술 (NET) 및 신제품 (NEP) 인증 실적<개정 2013. 7. 24>	100/건	
산업체연구비 수혜액	38	민간 산업체로부터 수주한 연구비	기존 연구비 수혜액 배점 기준과 동일		

※ 연구비 수혜액에 따른 배점(산업체연구비 수혜액 제외)

이공계 (코드 : 101)		인문계(생활체육학과, 수학과는 인문계열 배점 적용) (코드 : 102)	
수혜액	배점	수혜액	배점
1억원 이하	20점/천만원	3천만원 이하	30점/천만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200점 + 10점/천만원 (1억원 초과금액 기준)	3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90점 + 20점/천만원 (3천만원 초과금액 기준)
3억원 초과	400점 + 5점/천만원 (3억원 초과하는 금액 기준)	1억5천만원 초과	330점 + 10점/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 기준)

- 연구비 수혜액 인정 :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연구 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시행세칙에 근거한 외부 연구비 수혜액 <신설 2013. 7. 24>
- 가. 연구비 수혜액에 따른 배점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월수에 비례하여 해당 년도별로 반영 <개정 2013. 7. 24>
- 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연구비가 구분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 연구비 총액 - 공동연구자 해당연구비 총액
- 공동연구자의 연구비 : 해당연구자의 연구비

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연구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 해당연구자 연구자 일정부분을 책임자에게 우선 배정 후 나머지를 1/n으로 배분

3. 봉사 분야 기준

구분	평가항목	단위 점수	점수 상한	비고	
교내봉사	입시관련업무(출제, 감독, 면접, 입시상담 등)	10	40	모든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 수상 및 수훈은 공동 연구원 인정 환산을 적용	
	교수회의 참석 등 대학 봉사 (학장/대학원장/기관장이 평가, 교수회의 등 공식행사 참석 여부를 반영)	0~20	20		
	학과회의 참석, 학생 지도 등 학과 봉사 (학과장이 평가, 학과 공식 행사 참석 여부를 반영)	0~20	20		
	처장	40	40		
	처장을 제외한 교무위원·교수평의회 의장	30	30		
	학교 부속, 부설기관의 장, 학과장(주임교수), 교학부장	20	20		
	인중 PD, 각종위원회의 장, 인제니움학부대학 주관교수	15	15		
	위원회 위원, 교수평의회/연구소 운영위원, 교평의장단	10	30		
	교내 언론지 기고 등	5	20		
	교수 워크샵(교수법 개발 등)	10	30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5	10		
교외봉사	※학회의 장, 저명저널 편집장	30	30	임기제 인정비율 • <기본> 두학기 : 100%, 한학기 : 50% • <응용> 1%학기이상 : 100%, 1학기초과 : 75%, %학기이상 : 50%, %학기미만 : 25%	
	※학회 임원급 이상	15	15		
	※학회 위원회 위원	10	10		
	국제적 학회의 위원급 이상	20	20		
	국제학회 또는 전국규모 ※학회 논문심사, 학술대회 주관위원급 이상	10	40		
	국제학회 또는 전국규모 학술대회의 사회, 토론, 논문 발표(초청)	10	40		
	각종 평가단 단장 및 평가위원, 단일성 심사/평가	5	30		
	주요 사회단체, 공공기관, 연구소의 위원급 이상	10	20		
	국가고시 또는 국가 채용고시 출제	10	20		
	강연(학술강연 및 교양강좌)	5	20		
	기고, 방송 출연	5	20		
	수상 및 수훈	국제저명 단체	30		제한 없음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20		
기타 기관 및 단체		10			

산학협력	지도(산업체 기술, 경영 및 창업지도)	10/건	30
	기술엑스포활동, 취업박람회기업유치 및 관리활동	5/건	-
	가족회사 유치(관리)	10(3)/건	-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10/건	-
	교원 창업	10/건	-
	단과대 산학협력활동(교수업적평가위원회 평가)	0~10	10

※ 학회 인정조건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발간 학회

※ 봉사분야 상한 점수는 100점

4. 산학협력 분야 기준

분류	평가항목		점수	비고
	항목	세부내용		
산학협력 교육	현장교육 또는 실습지도	현장 답사지도, 현장 실습(교육)/인턴쉽 지도, 모의재판·학술강연회·모의국회·작품전시·각종 전시회 지도, 교육인증관련 워크숍 및 특강참여 활동 등	0.5/건	2점 상한
	취업 성사 <개정 2013.7.24>	1) 학과(부)별 평가년도 직전 3개년 평균취업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해당 학과(부) 소속 전임 교원 전체에게 가산점부여 2) 취업성사 교수는 취업인원별 3점 3) 해당 학과(부)장은 학과(부) 성사인원 점수 합계의 1/2점 배점	1) [평가년도 학과(부)취업률-평가년도 직전 3개년 학과(부)취업률]*1점 2) 취업성사 1명당 3점 3) [해당 학과(부)취업성사 인원 점수 합계]* 1/2점	20점 상한
	계약형전공교과목개발 또는 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5/건	10점 상한
	위탁교육프로그램개발		3/건	15점 상한
	캡스톤디자인지도		5/건	15점 상한
산학협력 연구	국제특허 <개정 2013. 7. 24>	(1)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인정 <개정 2013. 7. 24> (2) 대학 소유권이 없는 특허는 현 기준점수의 30%를 배점. 대학 소유권이 있는 특허 중 지분을 100%는 기준점수의 100%를 배점, 50% 이상은 80%를 배점, 50%미만은 50%를 배점 (3) 최초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100% 점수 부여하고 이후 동일 내용의 추가 특허 등록에 대해 10% 가산점 부여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50% 공동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국내특허 <개정 2013. 7. 24>		100	
	전공 관련 국제표준기고문 (제출/채택)	-	10/90	
	전공 관련 국내표준기고문 (제출/채택)	-	5/45	
	실용신안		30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	본교 산학협력단에 소유권이 이전된 지적재산권	10	

	설계권			
	기술이전	기술이전료	100만원 당 10점	
	신기술, 신제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신기술 (NET) 및 신제품 (NEP) 인증 실적<개정 2013. 7. 24>	100/건	
	산업체연구비수혜액	민간 산업체로부터 수주한 연구비	연구비 수혜액 배점 기준과 동일	
산학협력 봉사	지도	산업체 기술, 경영 및 창업지도	10/건	30점 상한
	기술엑스포활동, 취업박람회 기업유치 및 관리활동	-	5/건	-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유치	10/건	-
		관리	3/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10/건	-
	교원 창업	-	10/건	-
	단과대산학협력활동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평가	0~10점	10점 상한